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82605 판결 [점유회수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5356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82605 판결

전문

원고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곽현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변론 종결2020. 12. 8.

판결 선고2021.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C C/T 및 좌대 분실물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만 및 육상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경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C이 녹동항에서의 하역작업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항만하역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녹동항에서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 작업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6. 23. 새벽부터, 그 당시 녹동항 야적장에 있던 C 소유의 별지 (주)C C/T 및 좌대 분실물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화물트럭에 실어 반출하였다(이하, 위 반출을 '이 사건 반출'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녹동항에서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반출 당시 녹동항 야적장에 있던 이 사건 각 물건은 위 하역작업과 관련된 C 소유의 컨테이너들과 그 좌대들로서 원고의 점유하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반출을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자였던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고,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실상의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7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이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도급·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참조).

4.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반출 당시 이 사건 각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실적 지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관한 책임관계는 사실적 지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적인 자료일 뿐이고, 어떤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점유(사실적 지배)'를 전제로 한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 조합을 통한 점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조합을 통한 점유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물건은 이 사건 반출 당시 녹동항 야적장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개별 하역 과정이 아니라 녹동항 야적장에서의 점유관계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한편,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하역업무 과정에서의 이 사건 조합을 통한 사실적 지배는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는 결국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위하여 운송물들이나 컨테이너들을 보관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내용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이 실제 행하는 하역작업의 내용, C의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고흥군수로부터 야적장 사용 등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선박 하역을 위해 녹동항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을 가져다 놓거나 가지고 나오는 업무나 야적장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녹동항 야적장에 있는 컨테이너들에 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사실적 지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출 이전에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③ 또한,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20.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물건 등의 사용 및 외부유출 불가 내지 금지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개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직접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④ 마지막으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의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내용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의 운송물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두호

별지